202.66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 규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합니다.

- 2020 행정부법 127장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에 따라 선포된 코로나19 뉴욕주 재난 비상사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거주 임차인이 2020년 3월 7일 전에 승인을 받은 주거 부동산 퇴거 판단 또는 명령을 포함하여 이러한 판단 또는 명령의 집행 또는 시행을 2021년 1월 1일까지 중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개정됩니다.

2020년 9월 29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